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2. 13.(목) 10:00

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자원에 관한
조례안
(문화환경국 환경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79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2. 제안이유

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조사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기준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(안 제7조)
- 마.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·제거작업 공개(안 제8조 및 제9조)
- 바.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·제거 및 처리 등 지원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사.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

2)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석면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있어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무를 규정함.

3)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기준(안 제5조 및 제6조)

4)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(안 제7조)

-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(사용중지)와 조치의 이행상태 확인 및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.

5)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·제거작업 공개(안 제8조 및 제9조)

-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과 석면 해체 및 제거 방법, 관련기록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.

6)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·제거 및 처리 등 지원(안 제11조 및 제12조)

7)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(안 제13조)

다. 검토의견

-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을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「석면안전관리법」(2012.4.29.)을 제정함.
- 본 조례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며,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석면안전관리법」

[시행 2022. 12. 11.] [법률 제18907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